

#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아이수루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37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2월 03일

발 의 자: 아이수루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김 경, 김기덕,  
김동욱, 김성준, 김원태,  
남창진, 박수빈, 박승진,  
박유진, 박철성, 서준오,  
성흠제, 송재혁, 오금란,  
왕정순, 우형찬, 유정인,  
유정희, 이상훈, 이승미,  
이영실, 이용균, 이원형,  
이종태, 이종환, 임규호,  
임종국, 전병주, 정준호,  
최재란, 한 신, 허 훈,  
홍국표 의원(34명)

## 1. 제안이유

- 최근 디지털 정보화의 발달로 인해 일반 시민 외에도 청소년들 사이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임
- 특히, 디지털 성범죄의 각종 피해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등에도 전파 및 확대되고 있으나, 이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실질적으로 미비함
- 이에 대응하고자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통한 피해자 보호 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목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변경 (제명)

- 나. 피해자는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(안 제1조 및 제2조)
- 다. 피해자를 정의함에 있어 교직원과 피해자에 대하여 규정함 (안 제3조)
- 라. 계획 수립 시,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지원 규정 (안 제4조)
- 마.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경우 피해자 지원 상담 및 보호 지원 규정 (안 제8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등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” 를 “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” 로 한다.

제1조 중 “학생” 을 “학생과 교직원” 으로, “예방·대응 교육을 실시하여” 를 “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” 로 한다.

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“교직원” 이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모든 행정기구 및 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.
5. “피해자” 란 디지털 성범죄 행위로 피해를 받은 학생과 학생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 행위로 피해를 받은 교직원을 말한다.

제3조 중 “학생” 을 “학생과 교직원” 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3호 중 “상담” 을 “상담 및 보호 지원” 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제2호 중 “상담” 을 “상담 등 보호 지원” 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</u></p> 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<u>학생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성범죄 예방·대응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<b>제2조(정의)</b>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  <p>3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</u></p> <p><b>제1조(목적)</b> ----- <u>학생과 교직원-</u> ----- ----- <u>예방 및 피해자 보호·</u> <u>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</u> -----.</p> <p><b>제2조(정의)</b>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“교직원”이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모든 행정기구 및 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.</u></p> <p>4. (현행 제3호와 같음)</p> <p>5. <u>“피해자”란 디지털 성범죄 행</u></p>

위로 피해를 받은 학생과 학생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 행위로 피해를 받은 교직원을 말한다.

**제3조(책무)**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서울시내 학생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·대응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고,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계획의 수립) ① (생략)**

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2. (생략)
3.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사항
4. (생략)

**제8조(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) ① (생략)**

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(생략)

**제3조(책무)** -----  
----- 학생과 교직원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**제4조(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**

② -----  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3. ----- 상담 및 보호 지원 -----
4. (현행과 같음)

**제8조(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) ① (현행과 같음)**

② -----  
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 
지원 상담

3. ~ 5. (생략)

3. ~ 5. (생략)

2. -----  
상담 등 보호 지원

3. ~ 5. (현행과 같음)

3. ~ 5. (현행과 같음)

#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연번	조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1	제2조(정의) 제5호	△	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정의가 새로이 규정됨 <sup>1)</sup> 에 따라 현행 같은 조례 사업규정 <sup>2)</sup> 등에 영향을 미쳐 추가 비용이 발생 <sup>3)</sup> 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향후 증가하는 사업비용을 추정할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가 적어 비용추계가 곤란함
2	제3조(책무)	×	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강조한 규정으로 추가재정 소요 <sup>4)</sup> 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3	제4조(계획의 수립)	×	현행 같은 조례 제5조(실태조사)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므로 단일 규정상 별도의 비용발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
4	제8조(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)	×	서울시교육청 관련부서(평생진로교육국 민주사민교육과) 확인 결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현재 미운영 중이므로 별도의 비용수반 <sup>5)</sup> 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

- 1) 현행 같은 조례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어 피해자를 학생으로 해석하였으나 본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를 학생 및 교직원으로 새로이 규정함
- 2) 현행 같은 조례 제7조(피해자 보호 및 대응 지원 사업)의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지원 사업, 피해자 상담 및 심리 지원 사업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
 ⇒ 참고로, 학생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통합지원 체제는 구축하였으며,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학교폭력 접수 단계에서 피해학생의 통합지원 신청 의사 확인 후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연계하는 등의 형태로 기시행하고 있음

####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

제7조(피해자 보호 및 대응 지원 사업)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  
 <개정 2025. 1. 9.>

1.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지원 사업
2. 피해자 상담 및 심리 지원 사업
3. 디지털 성범죄 신고 체계 마련
4. 디지털 성범죄 대응 모니터링단 및 피해자구조단 구성·운영

- 3) 서울시교육청 문의결과 현재까지 행정적 지원(가해자-피해자 분리조치 등)을 위주로 시행하고 있으나, 최근 교직원에 대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향후 단일사업으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
- 4) 시장의 책무규정은 통상 선언적 조항(Ex. “~노력하여야 한다” 등)으로 조문 단독으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 제외하나 “~추진하여야 한다”, “~지원하여야 한다” 등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비용추계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음
- 5)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경우 추가비용(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비용변동 발생)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서울시 교육청 관련부서 문의결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현재까지 미운영하고 있고 향후 운영계획 또한 현재로서는 확정적이지 않아 이를 토대로 추정할 시 센터운영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본 규정에 따른 예산상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함

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 3. 미첨부 사유

□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
○ 동 개정안 제2조(정의)제5호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새로이 규정함에 따라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서울시교육청 관련부서(평생진로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) 확인결과 비용 추계를 위한 사업단가(P), 대상(Q)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현 시점에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

○ **[추계가능성 및 재정소요 영향 검토]** 서울시 교육청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 증액분을 추정하려면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(Ex. 개인별 재정적 지원여부 등)하고 소요되는 비용항목을 식별하는 한편 추가로 지원사업에 대한 단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

⇒ 이를 위해선 본 사업의 규모를 파악할 만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<sup>6)</sup>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

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재정분석담당관
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주    병    준

추계세제팀장      김    중    헌

추계분석관      손    제   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6)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현황 2차 조사결과(2024. 9. 9. 교육부 발표)등 각종 자료등을 확인하였으나 이를 근거로 서울시 교육청의 사업규모 및 단가를 추정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여 추계 객관성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